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9487 번 호

발의연월일: 2025. 3. 31.

발 의 자 : 양부남 · 강유정 · 권향엽

김한규 · 김현정 · 민형배

박균택 • 박상혁 • 박지혜

이해식 · 장종태 · 전진숙

조계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단지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지급,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등 자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유치 및 R&D 장려를 통한 미래먹거리 사업의 준비 등 기업 유인책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이에 산업단지 유치를 지속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용 목적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78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9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
면) ①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	면) ①
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	
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	
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	
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	
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	
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	
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	
소"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	
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	
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	
분의 35(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	
는 100분의 50)를 각각 <u>2025년</u>	<u>2030년</u>
<u>12월 31일</u> 까지 경감한다.	<u>12월 31일</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	②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 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 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 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 0분의 35(신성장동력・원천기 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에는 100분의 50)를, 과세기준 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 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 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 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 호가목에 따른 중견기업이 기업 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신성장 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 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 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

2030년 12월 31일
<u>.</u>
③

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 0분의 65)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 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 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신성장동 력 · 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 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75) 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 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 0분의 65)을 각각 <u>2025년 12월</u>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생 략)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

<u>2030년 12월</u>
<u>31일</u>
4
<u>2030년 12월</u>
31일
⑤ (현행과 같음)
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5년 12월 3 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 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세를 경감한다.

	2030년 12월 3
1일	
1. • 2. (현행과 겉	<u> </u>
②	

-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

1		
		2030년 1
	2월 31일	
2		
	2030년 12월 31일	

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 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 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 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 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

③
③
<u>.</u>
1
1
1.
1 <u>2030년 1</u>
<u>2030년 1</u>
<u>2030년 1</u>
<u>2030년 1</u>
<u>2030년 1</u>
<u>2030년 1</u>
<u>2030년 1</u>
<u>2030년 1</u>
<u>2030년 1</u>
<u>2030년 1</u>
<u>2030년 1</u>
<u>2030년 1</u>
<u>2030년 1</u>
<u>2030년 1</u>
<u>2030년 1</u>
<u>2030년 1</u>
<u>2030년 1</u>
<u>2030년 1</u>
<u>2030년 1</u>
<u>2030년 1</u>
<u>2030년 1</u> 2월 <u>31일</u>

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 나. (생 략)

-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정한다.가.・나. (생략)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 1. (생략)
- 2. 경감 내용

가.	· 나. (현행과 같음)
2. –	
<u>203</u>	0년 12월 31일
	·나. (현행과 같음)
4) -	
	<u>.</u>
	년행과 같음)
2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 (「건축법」 제2조제1항제 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 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 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생략)

- ⑤ ~ ⑧ (생 략)
-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 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를 과세할 때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

가
20001 100
<u>2030년 12월</u>
<u>31일</u> 나
ч.
<u>20</u>
30년 12월 31일
다.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9
00001 100
<u>2030년 12월</u>
<u>31일</u>

2항・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